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제공 –

환경부는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생원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일부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 편집자 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 · 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하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며,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 · 판매 · 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 · 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 · 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원료물질(原料物質)”을 “원료(原料)”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이용한 원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 · 구조 기준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 · 색상 · 무게, 재활용의 용이성 등 포장재의 재질 · 구조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재를 제조 · 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의 제조 · 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4를 삭제하고, 제9조의3 및 제9조의5를 각각 제9조의4 및 제9조의3으로 하며,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5)제1항 중 “제9조의4제2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9조의4(종전의 제9조의3)제1항 중 “포장재 재질 · 구조”를 “포장재의 재질 · 색상 · 무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

이 경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 · 판매 · 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 ·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제17조의2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활용부과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재활용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

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정기검사를 받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5조의11제2항 중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제33조의3(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우선 구매를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에 관한 정보
2.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 구매 목표의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 구매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5제3항 중 "원료물질"을 "원료"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3.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의 산출 또는 면제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제39조의2제1호 중 "제9조의4제2항"을 "제9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5조의8제3항"을 "제25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의2 중 "제9조의3제2항"을 "제9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3 중 "제9조의3제3항"을 "제9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5조의8, 제25조의11, 제37조 및 제39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재의 재질 · 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포장재에 대한 포장재의 재질 · 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11.] [환경부령 제1087호, 2024. 4.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 · 용기의 제조자 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사용억제 ·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중 종이컵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영업자의 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1회용 종이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를 "법 제2조제8호의2"로 한다.

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폐유리병을 가공 · 제조한 유리분말
2. 폐금속캔을 압축 · 파쇄하여 제조한 금속원료
3.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발포합성수지, 합성수지재질 제품 · 포장재를 가공 · 제조한 재생원료
4. 폐타이어를 가공 · 제조한 고무분말
5. 형광등의 유리를 가공 · 제조한 유리분말
6.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분리한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압축 · 파쇄하여 제조한 재생원료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까지를 각각 제3조의6, 제3조의7,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3조의5로 한다.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포장재의 재질 · 구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 · 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제3조의4(종전의 제3조의6)제1항 중 "법 제9조의4제1항 단서"를 "법 제9조의2제3항"으로, "별지 제1호의7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5(종전의 제3조의7)제1항 중 “법 제9조의4제2항”을 “법 제9조의2제4항”으로, “별지 제1호의8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6(종전의 제3조의3)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이 조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 · 구조”를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 · 색상 · 무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7(종전의 제3조의4) 제1항 본문 중 “제3조의3제3항”을 “제3조의6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 제1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음식물의 주문 · 배달 · 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기기를 말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① 법 제33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2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 · 용기에 표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1. 재생원료 사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2. 사용된 재생원료의 종류
3. 재생원료 사용비율

③ 환경부장관은 제품 · 용기에 표시된 재생원료 사용비율이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확인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1호의2 중 “법 제9조의2”를 “법 제9조의제1항”으로, “제9조의4”를 “같은 조 제2항 ·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3 중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호의2 중 “제3조의3제2항”을 “제3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방법 : 2024년 1월 1일

별표 1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별표 1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의 유류

1)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열분해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별표 1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음의 유류와 메탄올

1)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한 열분해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별표 1 제9호나목 중 “바이오디젤 및 BD20”을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디젤연료유(BD20) 및 바이오중유”로 한다.

별표 1의2 제목 중 “(제3조의7제1항 관련)”을 “(제3조의5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대상 1회용품란 중 “종이컵, 합성수지컵”을 “합성수지컵”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시설 또는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목욕장업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6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요령란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6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2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6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7서식을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종전의 제1호의7서식)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제1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7서식(종전의 제1호의3서식)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제4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작성요령란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6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 제1호의8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8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종전의 제1호의8서식)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7제1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8서식(종전의 제1호의4서식)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7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준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

사용되는 재생원료	적용대상	사용비율
1. 제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재생원료	가.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아트(PET)병	10퍼센트
	나.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 전자제품	20페센트
	다. 그 밖의 제품 · 용기	10퍼센트
2. 제1호 외의 재생원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 용기	1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시행 2024. 4. 11.] [환경부고시 제2024-65호, 2024. 4. 1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제품 · 용기에 사용된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확인방법 및 표시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제품 · 용기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비율 표시 도안)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품 · 용기 제조자등은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서의 사용비율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도안 모형을 선택하고, 도안 요령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제품 · 용기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4.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생산된 제품 · 용기에 한하여 해당 사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5. 동일한 공정에 같은 비율로 생산된 제품 · 용기에 서로 다른 사용비율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표시 기준일) 표시 기준일은 사용비율 표시 확인일로 적용한다.

제6조(기타사항) 환경부장관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 표시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표시(제3조 및 제4조 관련)

1. 도안 모형

〈 "가" 형 〉

〈 "나" 형 〉

2. 도안 요령
가. 크기: 도안의 세로 길이(H)를 기준으로 가로 길이(W)는 0.9×H 비율로 유지하되, 표시하려는 제품 및 용기 등의 크기, 형태, 주변의 도안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안을 적정한 크기로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도안의 기본색상은 녹색(C70 + M5 + Y100 + K5)으로 한다. 이 경우 C는 Cyan(청록색), M은 Magenta(자주색), Y는 Yellow(노란색), K는 Key(검은색)을 말한다. 다만, 표시하려는 제품 및 용기 등의 색상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흰색, 검정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문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도안 모형과 다른 임의의 서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표시 방법
가. 확인서의 비율대로 제품 · 용기에 표시하여야 하고, 비율 외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형태와 색상을 최대한 유지하여 사용하며, 구성요소 크기, 형태, 서체 등 변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표시 도안내 사용비율은 5% 단위로 표기하고, 10% 미만의 비율은 버림하여 표시한다.
라. 표시 도안의 최소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1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품 · 용기의 표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 각각 8㎜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사용비율(제4조 관련)
1. 재생원료는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각 호의 원료 중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사용비율은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적용대상별 최소한도를 적용하며, 다음 산식을 따른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재생원료 사용량 ÷ 해당 제품 · 용기의 출고량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KOPA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